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19111
----------	-------

제출일자 : 2021. 1. 27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사유

- 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됨
- 나. 직접 운영의 경우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관리·감독, 각종 민원 처리 등으로 업무 가중 우려
- 다. 전문 인력의 관리·감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수행 가능

2. 관련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주요내용

가.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대행하도록 함.

(1) 위탁내용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 (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사업 계획수립
- (나)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계약, 관리·감독, 사후정산 업무 등
- (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실태조사

나.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 있더라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며, 이후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 개요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 사업규모 : 연간 60 ~ 80가구 내외

(2) 사 업 비 : 381,268천원(국 172, 시 86, 군 123)

(가) 슬레이트 철거·처리(주택 :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 면적별 상이)

(나)지붕개량(취약계층 우선) 지원(가구당 최대 427만원)

※ 주택에 한하여 초과비 전액 군비 지원, 추후 국고지원액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

(3) 사업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사업 추진현황(최근 3개년)

구분	목표	처리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운영현황			비고
					운영방법	위탁기관	수수료	
'18년	51동	72동	196,120	191,535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19년	43동	61동	174,968	162,785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20년	89동	149동	391,908	378,653	위탁운영	(사)한국석면 안전협회	8%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1) 조사대상 : 7,569동 정도

구분	합계	등재건축물						미등재건축물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달성 군	7,569	2,532	1,086	377	1,199	565	89	549	42	617	305	23	185

(2) 사 업 비 : 34,000천원(국 17,000, 시 8,500, 군 8,500)

(3) 조사내용 :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소유자, 건축용도, 사용여부, 준공년도, 건축면적, 슬레이트지붕 면적, 지붕덧씌움 여부 등

라. 위탁 운영자 모집 및 선정 개요

(1) 모집 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2) 자격 요건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실태조사와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선정 방법 : 서면심사 후 위·수탁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4) 위탁 수수료 :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정함

5. 향후일정

가. 2020. 2. :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선정

나. 2020. 3.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건축물 실태조사 협약
체결

다. 2020. 4. ~ 12. : 사업 수행

라. 2020. 12. : 정산 보고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 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